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09. 10. 13.(화) 10: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위 원
이병기 위 원
형태근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고시 제정 및 900MHz 대역 손실보상 계획에 관한 건 (2009-47-216)

○ 박윤현 전과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과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위임한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의 세부적인 기준, 보상액의 조사·평가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전과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공고안 및 손실보상 계획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안 >

- (손실보상 산정 기준) 기존 시설에 대한 잔존 가액, 철거 비용 및 신규 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 비용(이자율) 산정 기준 등 규정

구 분	기존시설 잔존가액	기존시설 철거비용	신규시설 취득 금융비용
비 용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예금은행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비용

- (세부절차 및 방법) 시설자 등의 의견 반영을 위한 보상협의회 및 보상 절차의 객관성, 보상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상심의회위원회를 구성

· 감정평가사 3인 선정 방법(정부가 2인, 시설자가 1인 추천), 보상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세부 절차 규정

< 주파수 재배치 공고안 >

- 주파수 재배치 목적, 대상, 시행시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손실보상금 청구 및 지급 방법 등을 공고

< 손실보상 계획 >

- (대 상) 2011. 3. 31.까지 재배치 완료 대상 58회선 FM 중계용 설비

주파수 대역	용도 및 시설자	재배치 주파수	재배치 완료일
950~959MHz	FM방송중계용, 21개 시설자(58회선)	1.7GHz대역	'11.3.31.

- (방 법) 정부가 시설자에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우선 보상하고, 900MHz 대역을 할당받은 이통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징수

2)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관련 전자제품에 관한 고시」 제정에 관한 건 (2009-47-217)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지상파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 관련 전자제품에 관한 고시(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디지털 튜너 내장 대상 제품(안 제2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신카드가 내장된 컴퓨터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신카드가 내장된 모니터
 - 컴퓨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수신카드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녹화기
 - 홈 네트워크 기기와 연동하여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
 - 기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전자 제품
- 디지털 튜너 내장 기준일(안 제3조) 및 시행일(부칙)
 - (내장 기준일) 제조업자는 제조 일자, 수입업자는 통관 일자 기준
 - (시행일) 2010. 1. 1.부터 시행

3) '09년 1분기 의무 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2009-47-218~221)

-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09년 1분기 동안 방송법 제69조제4항, 제7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제57조 제4항에 규정된 법정 의무 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행정처분 내용

- 주된 방송 분야 편성비율 위반사업자

법 인 명	위 반 내 용	1년 이내 위반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액
씨제이미디어(주) [XTM]	편성비율 5% 이내 위반	-	기준금액(300만원)의 50% 감경	150만원

- 1개 국가 제작 영화 편성비율 위반사업자

법 인 명	위 반 내 용	1년 이내 위반여부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액
(주)에당엔터테인먼트 [에당아트]	편성비율 5% 이내 위반	-	기준금액(500만원)의 50% 감경	250만원
씨제이미디어(주) [채널CGV]	편성비율 10% 이내 위반	-	기준금액(500만원)	500만원
(주)홈티브이방송 [홈드라마]	편성비율 40% 초과 위반	1회	기준금액(500만원)의 100% 가산 + 직전과태료(1,000만원)의 50% 가산	1,500만원

4) 방송사업자 최대액 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2009-47-222)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의거, (주)CMB광주동부방송의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및 주식취득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SO명	주식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주)CMB광주동부방송	김희곤 100%	이인석 100%
(주)CMB광주방송	김희곤 83.53%	이인석 83.53%

5)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 (2009-47-223)

-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방송법 (2009. 8. 31.공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추후 위원들 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의결을 보류하기로 함.

6)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09-47-224)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위촉 위원 (총 9인)

구 분	성 명	성 별	전·현 직	비 고
위원장	형태근	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연임
방송 등 언론 분야	조의진	남	전 KBS 제작본부장	연임
	박원재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연임
교육, 문화계	김대호	남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연임
	김은미	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신규
	민병은	여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및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신규
법조계	방희선	남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규
시청자 단체	김태현	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연임
기타 전문가	조연하	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연구교수	연임

7) SK텔레콤(주), 舊 (주)KT프리텔, (주)LG텔레콤 및 (주)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09-47-178~181)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심인 SK텔레콤(주), 舊(주)KT프리텔, (주)LG텔레콤 및 (주)KT가 이용약관에서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하여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자를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내용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SK텔레콤은 2개 중앙일간지에, LG텔레콤은 1개 중앙일간지에, KT는 2개 중앙일간지에 각각 1회 공표(KT는 舊 KTF의 위반사실을 구분 적시)
 -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45,885개 회선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실제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함
 - (업무 처리절차 개선) 말소된 주민번호 등으로 개통된 280,811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업무처리 절차를 3개월 이내에 개선
 -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1억 4천 4백만 원, 舊 KTF 1억 2천 4백만 원, LG텔레콤 2억 2천 7백만 원, KT 4천 5백만 원
 - (기타) 시정조치와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

8)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 (2009-47-225)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신청인 (주)KT가 피신청인 SK텔레콤(주)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엠티이천망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 이행 관련 재정 사건을 심의 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

사. 보고사항

1)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주요 내용
 - (위원 구성)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형찬 KISDI 선임연구원

- (운영기간) 2009. 7. 10 ~ 2009. 9. 10.

- 당사자 의견

- (K T) 협정서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3G 이동단국교환기 직접접속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하며, SKT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면 정산 금액에 대한 협의는 가능
- (SKT) 3G 이동단국 직접접속은 접속제공 사업자의 매출과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재정이나 알선이 아니라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함.

※ 기타 보고안건으로 '사물통신 기반구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이 상정되었으나, 시간 관계 상 보고하지 못함

아.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 10. 14.(수) 10:00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8:05)

※ 11:40정회, 15:30 속회, 15:45 정회, 16:00 속회